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900037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피신청인: 신재영(jae young shi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아셈빌딩

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변리사 심재욱),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9-6 용전빌딩 3층

피신청인: 신재영,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30 휴먼시아
아파트 103동 502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삼성.name(XN--CG4BKI.NAME)”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가비아(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09. 12. 29.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1. 5.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0. 1. 5.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0. 1. 5.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0. 1. 6.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0. 1. 7.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2010. 1. 11.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0. 1. 27.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0. 1. 28.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답변서미제출통지를 2010. 1. 28.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10. 1. 28.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최성준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0. 2. 1. 최성준 조정위원으로부터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0. 2. 1.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2010. 2. 8.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10. 2. 8. 조정인에게 송부하였고 2010. 2. 9.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사실관계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사실, 삼성그룹은 그 계열사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등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표적인 그룹으로서, 2008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317.5조원, 매출액이 191.1

조원, 순이익은 11.8조원, 직원수 약 277,000명인 사실,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상표, 서비스표인 “삼성” 및 “SAMSUNG”은 세계적인 브랜드컨설팅회사 인터브랜드와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가 발표한 2009년도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를 175억달러로 평가받아 세계 19위에 랭크된 사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삼성” 및 “SAMSUNG”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상표, 서비스표 약 300개를 등록한 사실, 신청인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위하여 삼성그룹의 도메인 이름, 예를 들어 samsung.com, samsung.biz, samsung.co.kr, 삼성.com, 삼성그룹.com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인 “삼성.name”을 등록한 이래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 (ii), (i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하에서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A. 상표, 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동일, 유사 여부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최상위도메인 .name를 제외하면 신청인이 속해 있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상표, 서비스표인 “삼성”과 동일하다. 그리고 신청인이 위 상표의 등록상표권자나 위 서비스표의 등록서비스표권는 아니지만, 그 등록상표권자, 등록서비스표권자인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속해 있는 삼성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삼성그룹을 위하여 “삼성”이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이름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삼성” 상표, 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 “삼성”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을 충족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삼성” 또는 “SAMSUNG”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삼성” 또는 “SAMSUNG” 상표, 서비스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나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개인인데 그 성명이나 주소 등에 “삼성” 또는 “SAMSUNG”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i)의 요건도 충족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점,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최상위도메인을 제외한 “삼성”은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표적인 기업의 명칭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명함이 명백한 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삼성”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정되고,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ii)의 요건도 충족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

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삼성.name(XN--CG4BKI.NAME)>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최성준
1인 조정인

결정일: 2010년 2월 25일